

인천지방법원 2024. 11. 13 선고 2024가단1001 판결 [건물명도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10. 23.

판 결 선 고 2024. 11. 1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, ㄴ, ㄷ, ㄹ, ㅁ, ㅂ, ㄴ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C호
부분 31.27㎡를 인도하고,
나. 6,1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7. 5.부터 2024. 11. 13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
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다. 2024. 1. 8.부터 가.항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
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의 가., 다.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6,7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2. 적용법조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3. 일부 기각 부분

원고는 청구취지 제1의 가.항 중 금전지급 청구 부분에 관하여, 이 사건 임대차기간 중 2021. 11. 8.부터 2024. 1. 7.까지의 기간이 27개월임을 기초로 산정한 총 차임 1,620만 원에서 원고가 차임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9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67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, 위 기간은 26개월에 해당하므로 그 총 차임은 1,560만 원(=월 차임 60만 원×26개월)이고, 이에 따라 위 기간까지의 연체 차임은 610만 원(=1,560만 원-950만 원)이 되므로, 주문 제1의 나.항 기재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판사 박상훈

별지